< 화성우체국 공고 제2026-77호>

2026년도 제18회 화성우체국 실적급 공무직 상시집배원 채용 공고

2026년도 제18회 화성우체국 실적급 공무직 상시집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화성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 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비고
실적급 공무직 상시계약집배원	2명	화성우체국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 통상, 소포 및 특수취급우편물 배달 및 우편물 수집, 배달결과 정리 등 기타 부대업무	

2. 근무 조건

※ 금번 채용 공고하는 실적급 공무직 집배원은 **직종의 공식도입 전 시범운영하는 직종**으로서 시범운영기간(계약일로부터 1년간)이 종료되어 **직종이 폐지되는 경우 기존 운영 중인 상시계약집배원(공무직)으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전환하여 재계약 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상시계약집배원으로 **재계약되는 경우 기존 실적급은 소멸**됨)

○ 신 분 : 공무직(비공무원)

*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 근로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 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　　수 : 배달물량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실적급 체계

- 기 본 급 : 월급 2,016,880원

(추가 배달실적에 따라 연동하여 실적수당 별도지급)

- 수　　당 : 가족수당, 운전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 실적수당 :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배달한 물량 건수에 따라 급지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 지급 상한 있음

< 실적수당 지급 기준 >

구분	지급액			
실적수당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
	860원	880원	900원	920원
기본배달 물량	140통	120통	100통	100통

- 기　　타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화요일 ~ 토요일, 07:00~16:00)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

* 단, 업무처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로근무 또는 휴일근로 가능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휴　　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 업무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통상우편물과 20kg 상당(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우편물을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하여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지역제한 : 없음

다. 자격증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동시에 소지한 자
(단, 소포전담배달을 수행하는 실적급 공무직 집배원은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현 공고 해당

※ 정보처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사경력자 우대

라.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한 자

마.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북한이탈주민 제외)

바. 응시자격제한

ㅇ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경력사항 및 경력증명서 제출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자의 경우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청년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근무경력

ㅇ 상시계약집배원의 경우

- 집배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체국소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택 · 통상 · 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실적급 공무직 상시집배원	서류전형	실기시험 (체력검정)	면접시험

※ 제2차 실기시험과 제3차 면접시험은 같은 날 실시함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ㅇ 체력검정(3종목) :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0kg소포상자 이동하기

ㅇ 검정기준표 : 【별첨】

※ 측정 항목 중 2종목 이상 합격해야 제3차 시험(면접시험) 응시가능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과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ㅇ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예비합격자 선발) 면접시험 차 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계약해지 시 별도 시험 없이 합격자로 결정

라. 최종합격자 채용포기, 결격사유, 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6. 11. 10. (월) ~ 2026. 11. 20. (금), 09:00~18:00까지

※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함

다. 접수장소 : 화성우체국 3층 지원과 (☎ 031-8077-1957)

ㅇ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라. 접수방법

ㅇ **방문** 또는 **등기우편(화성우체국)** 또는 **전자우편(tax40013310@korea.kr)**

※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서식은 채용 공고문 서식 사용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1) (공고기간) '26. 11. 10. ~ '26. 11. 20.
2) (원서접수) '26. 11. 10. ~ '26. 11. 20.
3)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6. 11. 24.
4) (면접시험) '26. 11. 26. * 실기시험일자 동일
5) (채용점검) '26. 11. 26. ~ '26. 11. 30.
6) (최종합격) '26. 11. 30.

* 최종합격자 발표는 채용점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나. 이력서 1부【붙임2】

※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4】

마.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5】

바.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붙임6】

사.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하며,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자.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화성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화성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화성우체국 방문신청,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ㅇ 화성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라. 실적급 공무직 상시집배원은 비공무원으로,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상시계약집배원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또는 물적 피해와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격리조치로 면접 참여가 어려운 자가 면접 전날 18시까지 채용주관부서에 신고(통지서 포함)할 경우 별도의 비대면 화상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실기시험은 비대면의 방법으로 공정한 시험 진행이 어려우므로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우체국 지원과(☎ 031-8077-1957)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실기시험(체력검사) 기준표

성별/종목/연령대		합격	불합격
남자	윗몸일으키기 (기준시간: 1분)	25 이상	24 이하
	팔굽혀펴기 (기준시간: 1분)	20 이상	19 이하
	소포상자 이동하기(20kg) (기준시간: 40초 10m씩 왕복)	40초 이내	40초 초과
여자	윗몸일으키기 (기준시간: 1분)	10 이상	9 이하
	팔굽혀펴기 (기준시간: 1분)	10 이상	9 이하
	소포상자 이동하기(20kg) (기준시간: 1분 10m씩 왕복)	1분 이내	1분 초과